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6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서일준·김태흠・구자근

한무경 • 박성중 • 양금희

추경호・金炳旭・김은혜

김용판 · 권명호 · 강민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인력 및 자금 등의열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폐업하는 경우가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24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4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724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생 략)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제 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 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야 한다.
<u>⑤</u> 제2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⑥</u>
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그 이행	
의 점검을 위한 구매실적의 통	
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